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요일제 참여차량, 보험료 할인을 최대 8.7%

□ 금융당국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*에 참여한 자가용운전자에 대해 자손·자차사고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인 혜택도 크게 확대하는 등 현행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함.

○ 승용차요일제는 '06.3월 서울시가 시행한 이후 대구('09.1월), 경기도('09.2월)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, 보험료 할인혜택(2.7%)이 적어 참여자의 호응도가 낮고 차량운행량 감소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임.

* 월~금요일 중 본인이 선택한 요일(7시~22시)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

□ 서울시의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'06.1월부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상품이 개발되기는 하였으나, 요일제 준수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는 동일 내용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음.

○ 동 상품은 요일제 해당일에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담보(자손·자차)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할인되는 보험료는 전체 납입금액의 약 1% 수준(자손·자차담보의 2.7%)에 불과하여 보험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있는 실정임.

○ 그 결과 동 상품의 총 판매건수는 판매개시 이후 '09.7월까지 1,416건(보험료 798백만원)에 불과하는 등 판매실적은 매우 저조함.

□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선하여 보험료 할인을 약 8.7%까지 확대하는 한편, 약정일 사고 시 보상범위도 자손·자차담보까지 확대하기로 함.

○ 요일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해주는 기계장치를 보험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하고, 보험계약 만기 시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 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됨.

□ 향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보험소비자는 보험료 할인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료(10~30%) 감면, 자동차세(5%)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(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 추진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11/11)